

서울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20131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황예림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주

피고, 피항소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민지훈, 최길림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합5124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48,4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3. 30.자 채권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3. 30.자 채권양수도계약을 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D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수도계약이 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덧붙이는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사유로 제3자에게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던 의무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피고 B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등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3. 30.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위 2018. 4. 6.자 이 사건 합의 이전에 2018. 3. 30.자로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1). 피고 C의 D에 대한 위 50억 원의 청구권은 피고 B이 2018. 3. 30. 이전에 취득한 청구권을 피고 C이 2018. 3. 30.자로 양도받아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 C이 아래 4.나.(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3자간의 합의에 따라 2018. 4. 6.자로 D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비로소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이 야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덧붙이는 판단

(1) 2018. 4. 6.자 합의 중 ‘D이 피고 C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의 효력 2018. 4. 6.자 합의(‘이 사건 합의’이다.) 중 피고들 및 D에 관한 부분은 ‘피고 B이 D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D이 피고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억 원, 피고 C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50억 원 합계 70억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D이 피고 C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다시, ① 피고 B이 D을 위하여 이행하는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하여 D이 피고 C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D과 피고 C 사이의 합의’와 ② 위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하여 피고 C이 D으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피고 B이 허락하고 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합의’, ③ 위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하여 D이 피고 C에게 지급하는 50억 원에 대하여 피고 B이 D을 상대로 지급 청구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피고 B과 D 사이의 합의’ 등 3면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 C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위 ①, ②, ③의 합의는, 위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귀속될 70억 원 중 50억 원을 피고 B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용역대금이라는 허위의 명목을 내세워 피고 C 앞으로 빼돌리고자 한 행위로서, 이는 피고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C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 B에게 손해를 가하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C의 대표이사인 N과 피고들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의 업무상 배임행위에도 해당하여 모두 무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건축주 명의는 모두 피고 B에게 속하는 권리이므로, 그 이전 및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D이 제공하는 금원은 모두 피고 B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하여 D이 제공하는 70억 원 중 피고 B이 지급받기로 한 금원은 2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모두 피고 C이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 C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 B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거기에는 마땅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 B이나 피고 C은 이를 정당화할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리는 피고 B의 것이고, 피고 C의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 권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대부분은 피고 C이 차지하고, 피고 B은 20억 원 밖에 받지 못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한 이는 피고 C에게 이익이 되고 피고 B에게 손해가 되는 전형적인 배임적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 C은, D에게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과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56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항소와 인천지방법원 2017라740호 제소전화해조서 결정경정사건의 재항고를 각 취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50억 원은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항소 및 재항고의 취하 등은 모두 그 권리자이자 소송당사자인 피고 B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일 뿐, 거기에 피고 C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피고 C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C이 D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은 이렇다 할 것이 없으며, 실제로 피고 C은 그와 관련하여 D에게 어떠한 형태의 용역도 제공한 바 없다.

(다) 피고 B이 위 사항들의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혹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이 사건 합의일인 2018. 4. 6. 무렵에는 7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을 뿐, 피고 B이 위 소유권이전이나 건축주 명의변경, 향소 및 재향고의 취하 등을 이행해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 또한 피고 B의 사내이사와 피고 C의 대표이사를 N이 겸하고 있고, 피고들 모두를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N이나 O로서는 피고 B의 법적·실질적 대표 자격으로 위 사항들을 스스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 C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 B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권리자인 피고 B에게 귀속될 금액 중 대부분인 50억 원을 권리자 아닌 피고 C이 차지하게 할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명분도 없다. 위 50억 원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피고 C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들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은 2018. 3. 1. D이 제공하는 70억 원을 용역대금 또는 합의금 중 어떠한 명목으로 받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면서 P 변호사에게, “용역계약으로 진행할 시에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C이 되는 것이 좋음)”, “B(수분양자 등에 법적으로 부채가 많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됨)”, “C(용역으로 받아야 하고, 수표로 받아야 함) (C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부가세처리의 어려움이 있음) (용역이 단순한데 많은 비용을 받는 문제가 있음)”, “C과 B의 대표자이고 사내이사인 N의 개인구좌로 받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함(세무처리가 난해함) (금액이 크므로 대표자가 가서 직접 수표로 받는 방법이 있음)” 등의 내용을 이메일(갑 제8호증)로 보냈는바, 그 내용은 ‘D이 제공하는 70억 원을 피고 B이 지급받을 경우 수분양자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우려되므로, 피고 C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데, 그 경우에도 제공하는 용역은 단순한데 큰 돈을 받게 되어 문제가 있으니 N 개인구좌로 지급받거나 N 개인이 수표로 받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위 70억 원 중 50억 원을 피고 C이 지급받기로 한 것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고, ‘용역대금’ 운운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마) 피고 C은, 피고 B과 D로서는 피고 B의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피고 C이 사업시행권

이전에 반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시행권을 하자 없이 확실하게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 C은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여 피고 B이 D으로부터 받을 합의 대가 중 50억 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강제집행을 우려하는 앞서 본 이메일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N과 O이 피고들 모두를 법적·실질적으로 대표하거나 지배하고 있어 피고들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당시의 상황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그 주장과 같은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가 피고 C이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차지하게 되는 배임적인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이 D에 대하여 가지는 50억 원의 청구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4. 6.자 이 사건 합의 중 ‘D이 피고 C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구성하는 위 ①, ②, ③의 합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B은 D에 대하여 그 중 위 ③의 합의에 따른 의무, 즉 ‘50억 원에 대하여 지급 청구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위 50억 원은 원래 피고 B에게 귀속될 것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피고 B은 D이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합의가 무효가 된 이상 D을 상대로 직접 위 5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은 피고 B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50억 원의 청구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김흥준, 판사 김우수

별지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4. 6.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합의금 채권 70
억 원 중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양도된 합의금 채권 50억 원. 끝.

1) 이는 원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서면과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